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공주대학교 학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할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2.>

제2조(운영관리) ①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공주캠퍼스에 본관을 두고, 공주캠퍼스 이외의 각 캠퍼스에 분관을 둔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2024. 2. 22.>

②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③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관(분관)장(이하 “생활관(분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④ 방학 중 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1. 30.>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중 개관과 방학 중 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 생활관(분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및 모든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 입실 학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관(분관)장은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5조(관생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의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관생의 활동은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6조(관생수칙) 생활관(분관)장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수칙을 정한다. <개정 2016. 11. 30.>

제2장 조직

제7조(생활관(분관)장 등) ① 본관에 학생생활관장(이하 “생활관장”이라 한다), 분관에 학생생활관분관장(이하 “분관장”이라 한다), 본관과 분관에 생활지도교수와 생활지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2023. 12. 5.>

② 생활관장 및 분관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12. 18.>

③ 생활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3. 12. 5.>

④ 생활지도사는 재학생 중에서 생활관(분관)장이 임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2023. 12. 5.>

제8조(생활관(분관)장 등의 임무) ① 본관의 생활관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분관을 포함한 생활관 주요운영 현황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2. 18.>

② 분관장은 분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18.>

③ 생활지도교수는 생활관(분관)장을 보좌하며, 생활지도교수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5.>

④ 생활지도사는 생활관(분관)장과 생활지도교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생을 관리한다. <개정 2016. 11. 30., 2023. 12. 5.>

[제목개정 2016. 11 .30.]

제9조 삭제 <2023. 12. 5.>

제10조(직원) ① 생활관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직원 운영은 노사간 단체(임금)협약과 「국립공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3. 12. 5., 2024. 2. 22.>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2. 24.>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생활관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12. 24., 2016. 11. 30., 2023. 12. 5.>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분관장, 학생복지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정보화과장 및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12. 24., 2016. 11. 30., 2019. 10. 29., 2023. 12. 5.>

③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생활관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3. 12. 24.>

④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분관장, 재무과장,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생활관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13. 12. 24.>

1. 관생 대표 3명
2. 관련전문가 1명
3. 학외 인사 1명

제1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1. 생활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24.>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12. 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2. 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2. 18.>

제4장 입실과 퇴실

제15조(입실절차) 생활관에 입실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에 입실원서를 생활관으로 제출한다.

제16조(입실자격 및 입실배정인원) 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한 사람으로 하며, 입실배정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제17조(선발기준) 입실을 원하는 학생수가 수용 정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1. 30.>

1. 사회적 배려자 등 우선선발대상자

2.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제18조(입실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실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1.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전염병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3. 제21조에 따른 퇴실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생활관(분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입실자격의 제한 기간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1. 30.>

제19조(입실등록) 생활관(분관)장으로부터 입실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생활관비를 완납한 다음 생활관(분관)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처소에 입실한다. <개정 2016. 11. 30.>

제20조(임의퇴실) 퇴실을 원하는 관생은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 정해진 퇴실원서를 퇴실 7일 이전에 제출하여 생활관(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21조(퇴실처분) 생활관(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생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1. 정해진 벌점을 받은 사람
2. 생활관비를 미납한 사람
3. 학교등록 미필자
4.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5.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6. 교직원에게 예의를 벗어난 언어, 행동, 태도를 보이는 사람
7. 형사상 위법행위를 한 사람
8. 관내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한 사람
9. 대리 입실을 하거나 제공한 사람
10. 허가없이 이성(異性)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을 숙박시킨 사람
11. 그 밖의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사람

제22조(입실허가 및 개관기간) ① 입실허가는 학년도 초마다 생활관(분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② 입실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 입실자의 입실기간은 해당 학년도 개관만기일로 종결된다. <개정 2012. 12. 18.>

제5장 재정

제23조(재정부담) 보조를 받은 경비 외에 생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개정 2016. 11. 30.>

제24조(재정운영) 생활관의 재정운영은 생활관(분관)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16. 11. 30.>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26조(생활관비 및 장학금 지급) ① 관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생활관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사용한다. 다만, 은행이자는 관리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1. 30.>

1. 관리비: 생활관 직원 급여 및 비품구입 등

2. 식비: 주・부식비 등

③ 생활지도사와 관생자치회 임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4., 2016. 11. 30.>

제27조(경비추가징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28조(개관 후 생활관비의 징수와 환불) 개관 후 생활관비의 징수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1. 30.>

제29조(생활관비 납부시기) 관리비 및 식비는 학기 마다 학기 개시 전 별도 공고되는 사항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일부개정, 2012. 12. 18.)

제30조 삭제 <2023. 12. 5.>

제6장 상벌

제31조(포상) 생활관(분관)장은 생활관내 공동생활이나 각종 행사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에게 표창 또는 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32조(징계) 관생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1. 경고

2. 퇴실

제33조(벌점제)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하는 관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1. 30.>

[본조신설 2012. 12.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2.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31호, 2001.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주옥룡캠퍼스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2학년도 까지 공주문화대학 생활관 관련 규정 등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368호, 2001. 10. 9)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9.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05호, 2003. 6.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39호, 2004.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9. 규정 제 461호)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508호, 2006.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4. 규정 제6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8. 규정 제7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4. 규정 제8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30. 규정 제8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 규정 제11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2. 학칙 제1177호)(국립공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 및 지침의 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및 지침의 제목 및 본문 중 “공주대학교”는 “국립공주대학교”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12. 2. 규정 제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